

경기도 공고 제 2026-2069 호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업체 행정처분(영업정지) 변경 공고

경기도 공고 제 2026-5684 호(2026. 6. 10.)에 따른 행정처분(영업정지)의 변경 사항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 년 9 월 16 일

경 기 도 지 사

상 호 (대 표 자)	소재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 분 내 용		근거법령 및 변경 사유
			변경 전	변경 후	
(주)중원종합건설 (대표: 강대웅)	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남산길 10, 203호	건축공사업 (04-1080)	영업정지 4개월 (2026. 6. 16.~ 2026. 10. 15.)	영업정지 3개월 15일 (2026. 6. 16.~ 2026. 09. 30.)	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대표자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